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류호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95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2. 18.

발 의 자 : 류호정 · 배진교 · 이은주
심상정 · 장혜영 · 강은미
강성희 · 용혜인 · 김주영
윤미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고, 유지청구권에 대하여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%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여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바, 이러한 소위 ‘먹튀자본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뿐만 아니라 주요주주에 대하여도 권리행사에 있어서 충실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, 그 의무의 내용에 회사의 노동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. 아울러 유지청구권이나 회사의 해산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

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이사 및 주요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, 유지 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폐지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82조의3, 제402조 및 제517조의2 신설 등).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2조의3의 제목 “(理事의 忠實義務)”를 “(이사와 주요주주의 충실 의무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이사는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는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반하여 그 의결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402조 중 “會社에”를 “회사와 그 이해관계자에”로, “株主는 會社”를 “株主,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(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)은 회사와 그 이해관계자”로 한다.

제5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또는 주주권행사에 관한 협약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절차를 먼저 이행하

여야 한다.

제5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17조의2(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해산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경우에 그 회사와 이사, 지배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4조제1항 또는 제517조제2호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6개월 전부터 그 회사의 영업이나 지분을 인수할 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회사와 이사, 지배주주는 회사의 근로자, 노동조합, 채권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의 절차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즉시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절차의 진행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제374조제1항 및 제51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해산 또는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(회사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할 수 없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⑤ 회사의 근로자, 노동조합, 채권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회사의 영

업이나 지분을 인수할 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의 해산 또는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회사의 회생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해산에 관한 적용례) 제517조 및 제5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회사가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第382條의3(理事의 忠實義務) (생략) <신 설> <신 설>	第382條의3(이사와 주요주주의 충실의무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이사는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. ③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는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반하여 그 의결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第402條(留止請求權) 理事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한 行爲를 하여 이로 因하여 會社에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길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監事 또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の 1이상 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會社를 爲하여 理事에 對하여 그 行爲를 留止할 것을 請	第402條(留止請求權) ----- ----- -----회사와 그 이해관계자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株主, 회사의 근로자의

求할 수 있다.

第517條(解散事由) 株式會社は 다
음의 事由로 因하여 解散한다.

<단서 신설>

1. ~ 2. (생략)

<신설>

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(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)은 회사와 그 이해관계자-----

----.

第517條(解散事由) -----

----. 다만,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또는 주주권행사에 관한 협약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제517조의2(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해산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경우에 그 회사와 이사, 지배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4조제1항 또는 제517조제2호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6개월 전부터 그 회사의 영업이나 지분을 인수할 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회사와 이사, 지배주주는 회사의 근로자, 노동조합, 채권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의 절차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즉시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절차의 진행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제374조제1항 및 제51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해산 또는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(회사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할 수 없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⑤ 회사의 근로자, 노동조합,

채권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
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수령
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
도 그 회사의 영업이나 지분을
인수할 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
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
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
의 해산 또는 제374조제1항 각
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
회사의 회생절차가 계속 중인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